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산 립 문 화 · 휴 양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등¹⁾에서의 금지행위 확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안 제9조의8 신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로 금지행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1)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별로 연 1회 이상 점검
토록하고, 사유림 내 위치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검하며,
점검방법 및 동의절차는 산림청장이 별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 4. 14~5. 2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을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법 제4조제9항”으로 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자연휴양림등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법 제21조의6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상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 시·도지사는 사유림 내에 위치한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실태점검 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 ----- ----- 제4항----- ----- ----- ----- ----- ----- ----- ----- ----- ----- -----.
②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 ----- ----- ----- ----- -----.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	③----- - 법 제4조제9항----- ----- -----

는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

제9조의8(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 행위) ①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자연휴양림등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법 제21조의6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 관리)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
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
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
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상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연계 활용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
항

⑥ 시·도지사는 사유림 내에 위치
한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제
4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경우에
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실태점검 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산림청장이 정

<u>④</u> (생략)	<u>한다.</u> <u>⑧</u> (현행 제4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연 락 처	(042) 481 - 4211